

[별지 3 호]

빛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	성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 락 처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 치 위 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치시설(용량)		m^3 (톤)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① 빛물이용시설 설치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후 진행 하여야 함 (선착순 접수로 인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)</p> <p>② 빛물이용시설 설치 후 서울시에서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(연1회 이상 방문)</p> <p>③ 시설 설치 후 5년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(5년 후 철거 가능) 빛물이용시설 미이용, 고장 후 방치, 무단 철거시 지급된 보조금은 아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환수 할 수 있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</th> <th>1년 미만</th> <th>1년 이상 2년 미만</th> <th>2년 이상 3년 미만</th> <th>3년 이상 4년 미만</th> <th>4년 이상 5년 미만</th> <th>5년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감가상각비 (%)</td> <td>0</td> <td>20</td> <td>40</td> <td>60</td> <td>80</td> <td>100</td> </tr> <tr> <td>환수기준 (%)</td> <td>100</td> <td>80</td> <td>60</td> <td>40</td> <td>20</td> <td>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④ 설치업체는 신청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설치업체와 신청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</p> <p>⑤ 고장 후 원활한 AS 처리를 위해 설치업체의 AS 기간, 유·무상 보장범위 등에 명확히 확인 후 설치업체를 선택토록 할 것 특히, 겨울철 동파로 인한 고장 사례가(펌프 등) 발생 할 수 있으니, 예방을 위한 관리법을 반드시 숙지 할 것</p> <p>⑥ 해당 시설을 옥상에 설치시 노후 건물의 경우 시설하중으로 건물의 안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위치 선정시 유의할 것</p> <p>⑦ 매매, 전세 만기 등으로 소유자 변경시 빛물이용시설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것 위 사항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.</p>							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	1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	2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4년 미만	4년 이상 5년 미만	5년 이상	감가상각비 (%)	0	20	40	60	80	100	환수기준 (%)	100	80	60	40	20	0
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	1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	2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4년 미만	4년 이상 5년 미만	5년 이상																					
감가상각비 (%)	0	20	40	60	80	100																					
환수기준 (%)	100	80	60	40	20	0																					
2021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			서명 또는 인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시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지 4 호] (학교만 작성)

빛물이용시설 교육 계획서	
교육 기간	
교육 방법	<p>(체험 활동, 영상 시청 등 교육 활동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 교육 관련 자료 및 영상이 필요한 경우 물순환정책과 연락 요망</p>
<p>위 빛물이용시설 교육계획서에 따라 빛물이용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.</p>	
2021년 월 일	
작성인	서명 또는 인
서울특별시시장 귀하	

[별지 6 호]

빗물이용시설 설치 비용 청구서

건 명 :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

청구금액 : 일금 원정(₩ 원)

※ 설치비의 90%[최대 보조금 신청 가능액 : 0.6톤-1,938천원/1톤-2,049천원/2톤-2,174천원]

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예금계좌)

거 래 은 행	은행	지점
계 좌 번 호		
통 장 명 의 (설치자 본인)		

2021 년 월 일

신 청 자 주 소 :

대 표 자 : 인

서울특별시지출담당공무원 귀하